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40호 2024. 4. 22.(월)

##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5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6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회							
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4.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 미정비로 2023년 市 종합 감사시 지적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코자 함

## 2.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안 제12조의3)
  - 노상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획 기준 신설
- 용어 및 맞춤법 등 정비
  - 안 제1조, 안 제5조제3호, 안 제19조제1항제3호~제4호, 제1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3조제1항

## 3. 의견제출

-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 032-749-8752 / FAX : 032-749-8749  
이메일 : [chumsin@korea.kr](mailto:chumsin@korea.kr)

## ○ 제출서식

개정(안)	사유(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참고

-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본문 중 “공영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1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 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조사”를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

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17조”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8개월 이내에 이 조례 제12조의3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4. ~ 17. (생 략)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4. ~ 1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

---

---

---

### 1. • 2. (현행과 같음)

### 3. ----- 「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제8조-----

## ② ----- 「주차장법 시행령」

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 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 ③ (생 략)

제23조(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  
에 의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⑤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과징금처분) ① 「주차장  
법 시행령」 제17조-----.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9일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2. 개정이유

-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2항)
-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과장급 이상 관리직으로 규정(안 제2조제3항)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안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수구청장(세무2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 세무2과(☎749-75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세무2과
- 연락처: ☎ 749-7531, FAX 749-7459
- E - mail : mjh671@korea.kr
- 연수구 홈페이지([www.yeonsu.go.kr](http://www.yeonsu.go.kr)/ 입법예고)

### 4. 참고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 신 · 구조문 대비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54조에서 정한” 을 “제54조에 따라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호”를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연수구 지방세심의 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 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과년도”를 각각 “지난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제2조제2항제1호”를 “제2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2조제2항제2호”를 “제2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중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전심사·의결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사전심사·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

###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납부지연 가 산 세	
합 계					
벼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지 방 세 특 별 한	징 수 예 공 적 등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납부지연 가 산 세	
합 계					
탈 루 세 액 등 제 보					
체 납자 은 닉 재산 신고					
버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지 방 세 징 수 예 특 별 한 공 적 등					

[별지 제10호서식]

##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확인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월일			

※ “구분”란에는 지난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신 · 구조문대비표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  
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  
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

조에 따른 고액·상습 체  
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

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  
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  
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

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 <신 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자

2. (생 략)

③ (생 략)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

1.

-----  
-----  
제6조에 따른 연수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3. ----- ----- -----
	가. <u>과년도</u>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u>지난연도</u> ----- ----- -----
	나. <u>과년도</u>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나. <u>지난연도</u> ----- ----- -----
	다. <u>과년도</u>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u>지난연도</u> ----- ----- ----- ----- -----
4.	4. <u>제2조제2항</u>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4. <u>제2조제4항</u> ----- ----- -----
	가. <u>제2조제2항제1호</u>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u>제2조제4항제1호</u> ----- ----- -----. ----- ----- ----- ----- ----- ----- -----.

나.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2조제3항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은 위원회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나. 제2조제4항제2호-----  
-----  
-----  
-----  
-----

② 제2조제5항-----  
-----  
-----  
-----.

제6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7  
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  
· 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 정리하여  
야 한다.

5. -- 밖에 -----  
-----

<삭 제>

<삭 제>

제10조(대장 비치) -----  
-----  
-----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  
식-----  
-----  
---.